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



C/O/N/T/E/N/T/S

PART	1	서문	1
PART	2	컨설팅 지원사업	2
		1. ESG 환경성 컨설팅(환경경영, 온실가스, 환경오염)	2
		2. 탄소중립 컨설팅(온실가스 감축, 할당대상업체)	6
PART	3	예산 지원사업	10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온실가스 저감 설비(필수)+환경설비) ..	10
		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환경설비)	15
		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온실가스 저감 설비)	21
		4.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설비 지원(온실가스 저감 설비)	39
		5.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지원사업(온실가스 저감 설비, 용자)	47
		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용자)	55
		7. 미래환경육성용자(환경설비, 용자)	56

1 서문

ESG는 기업경영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업이 외부에 지속가능한 기업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경영방식입니다.

* 예시 : 사업장 온실가스·환경오염 저감, 임직원·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경영, 조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방식 등

최근 EU의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부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등 국제적인 규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의 ESG 경영에서 더 나아가 납품업체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투자사들도 투자시 대상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ESG 경영(ESG 관련 설명, RE100 요구, 온실가스 또는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분야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각 사업별 주요내용 및 문의처 등을 담고 있습니다.



2.1 ESG 환경성 컨설팅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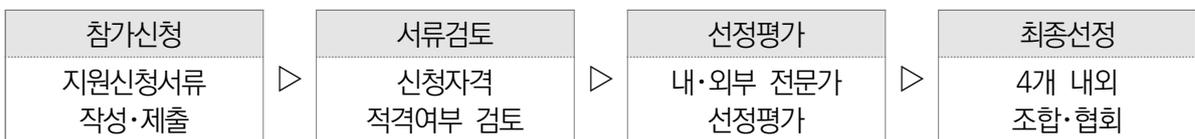
- 환경경영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환경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단, 조합·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만 가능)
 - ※ 조합·협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회 회원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ESG 컨설팅(신규, 제조), ESG 멘토링(기존 참여 조합·협회 대상), 환경안전통합시스템 시범(신규, 제조)
 - (ESG 컨설팅)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원 절약, 환경경영 체계 구축 등
 - (ESG 멘토링) 멘토-멘티 연결을 통해 환경경영 노하우 전파 지원
 - (시스템) 환경 규제 대응 및 자원·에너지·환경오염물질 자체 관리 지원
- **(지원규모)** ESG 컨설팅 3개 조합·협회(각 25개사 내외), ESG 멘토링 1개 조합·협회(10개사 내외), 환경안전통합시스템 1개 조합·협회(25개사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사전공고 매년 11월경, 참가신청은 매년 1월경



- **(신청방법)** 조합·협회가 대표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지원팀

(☎ 02-2284-1961, kokyuwuong@keiti.re.kr)



참고 2 관련 서식

서식 1

사업명	2000년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부문	ESG 컨설팅 / 멘토링 / 시스템 시범적용 중 택1		
조합·협회		수행책임자	
<p>위의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위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p>			
		년 월 일	
(참여기업 명)	(대 표)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_____	_____ (인)	(직인/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참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		
확인사항 (사업기간 : 22 . . . ~ 22 . . .)		적합여부	
규모 기준 (A)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부적합()	
독립성 기준 (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부적합()	
유예기간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 부적합()	
총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부적합()	
<p>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업체명(세무사) : 주 소 : (☎:) 대표자 : (인)</p>			

〈작성요령〉

1.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란에 “○”표 하며, 종합 란에 A~C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등]로 대체 가능



2.2

탄소중립 컨설팅

■ 추진배경

- 사업장별 기술진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2년 40개 사업(480백만원)
- (지원내용)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진단
 - 현장 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 기술진단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온실가스 감축예상량 산정,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등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 1월(매년 초 공모)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e-mail 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팀

(☎ 032-590-5617, etspsd@keco.or.kr)

참고 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설비 :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등 · 재생에너지 설비 :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등 * 물이나 그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그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하며, 해당설비와 부대설비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2. 폐열회수 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5. 차압터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6.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7. 폐기물전처리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쇄기, 선별기 등
8. 인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9.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10. 고효율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11. 에너지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12.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발전 설비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우선적으로 소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2 지원 신청서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신청서			
기본정보	업체명		
	업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사업장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이메일		담당자연락처
신청정보	컨설팅 희망일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yr)
	연료사용량		전기·열(스팀) 사용량
	주요공정·원료사용량		
감축설비정보	기술진단 요청사항		
	주요 배출시설, 용량, 대수, 내용연수, 배출량 등 설비정보 사업장 현황 및 요청사항 등 기재		
	투자계획 및 기타사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계획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진단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업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탄소중립설비 기술진단 컨설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신청 및 지원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탄소중립 기술진단컨설팅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기술진단 컨설팅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직인)



3.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2030 NDC* 및 ESG 의무화 국제동향**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의 온실가스 저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 * 2030 NDC에서 산업부문은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에 222.6백만톤으로 감축 필요(△14.5%)
 -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안)' 발표('22.2.), 미국 SEC 탄소배출량 공시(Scope3) 의무화 추진('22.3.) 등
- 생산품의 공급망까지 ESG 경영 요구 확대,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친환경 생산체제 구축 지원으로 ESG 경영 기반 지원 필요
- 업종·규모별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체계의 롤 모델 제시, 제조업의 녹색전환 지원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가점부여)
- (지원내용) ① 온실가스 저감 설비비 및 환경관리설비 변경 비용 지원, ② 온실가스 저감효율 극대화 및 환경관리 최적화
 -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저감(필수) ②ICT설비 구축(오염물질 측정) ③대기오염물질 저감 ④수질오염저감 ⑤폐기물저감 ⑥자원순환증가 ⑦환경보건개선(악취, 소음, 진동 등) ⑧스마트시스템 ⑨공정·에너지(최소 3개 분야)
- (지원금) 총 900억원(사업자별 최대 10억원, 중소60%, 중견50%, '23년 정부안 기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1월 공고 예정('22.11월 사전공고 예정)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ESG기업지원부 (☎ 032-590-4804, 4833)

■ 참고사항 : 네이버, 유튜브에서 '스마트 생태공장' 입력시 사업 소개 및 참여 요건 등 안내

참고 1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신청서(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설치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우 :) 시설이 설치될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업 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업현황	협약기간	. . . ~ . .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100%)	천원 (%)		천원 (%)	
<p>위와 같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대표자 (*필요시) (인)</p> <p style="text-align: right;">※ 복수의 참여기업인 경우, 기업별 대표자 날인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p>첨 부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1부.</p>					

※ 신청기업이 여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든 신청기업의 정보 작성



사업 계획 요약

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오염물질 저감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 저감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환경설비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저감 <input type="checkbox"/> 악취 저감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생산공정 외) (상기 8개 분야 중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시설(생산공정 외) 3개 이상 선택 필수)
신청기업		과제명	※ 사업목표와 달성방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
금액(천원)			(현금)	
			(현물)	
비율 (%)	100		(현금)	민간 부담금 기준
			(현물)	

※ 환경부 지원범위의 해당사업비만 작성(산업부 클린팩토리,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비는 제외)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지원 분야별 사업목표를 정량적(%수치 등)으로 간략히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참고 2 증빙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 원본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제출
4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제출
5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사본 제출
6	고용 증빙 자료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7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8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증빙 서류 가능
9	가점 현황 증빙 자료	• 가점 해당 시 제출
10	시설 주요구성 자료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11	시설의 사양 파악 자료	•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
12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및 증빙서류	•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내역서 등 저감효과 산출자료 • 기존 오염물질 배출 현황 자료 - 공인기관이 발급한 오염물질 배출 성적서 및 Allbaro 폐기물관리 시스템 출력자료 등
13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설비는 비교견적 포함 제출
14	<별첨 14> 신청기업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15	<별첨 15>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16	<별첨 16>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17	<별첨 17> 시설 시공 업체의 실적증명원	• 개선설비의 제작 업체의 시공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 - 기존 개선설비 발주업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18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 실적
19	환경법적기준 준수 증빙서류	• 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자료 - 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최근 6개월간)



참고 3 **관련서식**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 과 제 명 :
2. 지원기업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부담금액 및 일자	금액(현금)(A=C+D)	선금(70%이상)(C)	잔금(30%이하)(D)
	부담일자	협약 체결 전 입금	중간점검 이후 30일 이내
현물 부담 금액	금액(현물)(B) ※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3.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추진배경

- 기업들은 녹색혁신 신기술 개발 이후 **실규모(full-scale) 실증데이터 부족**으로 시장진출에 애로 ⇒ **실규모 실증데이터 확보** 지원
 - ※ 녹색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에서 파일럿 규모로 실증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실규모(full-scale) 실증자료 필요
-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녹색혁신 신기술 적용 설비의 판로 개척** 및 해당 기술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 도출·개선** 추진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환경 신기술 설비 실증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공급기업**
 - **(공급기업)** 환경신기술 보유 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참여기업,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
 - **(수요기업)**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및 링커기업*을 비롯한 환경 신기술 설비 도입 의향이 있는 사업장
 - * 「녹색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22.6.8)」 참여 기업 6개사(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중부발전 등)
- **(지원내용)**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매칭, 신기술 적용 환경설비 도입 비용 보조
- **(적용기술)** 신기술 인증 및 관련 특허 보유 업체, **녹색융합클러스터 적용 가능 기술* 우선 지원**
 - * 핵심 5대 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과 5대 新녹색산업(환경 AI·ICT, 바이오가스, 공정부산물 등) 중심으로 설정, 향후 클러스터를 통해 집중 육성 추진
- **(지원금)** 총 130억원(수요기업 최대 10억원, 공급기업 최대 6억원, 최대 70%)
 - 공급기업에 비용 보조, 시설·설비 설치 비용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1월 공고 예정('22.11월 사전공고 예정)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자주찾는 대국민 서비스-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ESG기업지원부 (☎ 032-590-4824, 4825)



참고 1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계획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					
과제명					
주관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 매칭희망	업 체 명			대표자명	
	설치현장주소				
	담당자명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업현황	협약기간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100%)	천원 (%)		천원 (%)	
<p>위와 같이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기관(설비수요기업)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복수의 설비공급기업인 경우 기업별 대표자 날인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첨 부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부.					

수행기관(앞쪽에서 계속)					
설비공급기업(2)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업 종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3)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업 종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n)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 업 계 획 요약

과 제 명			
설 비 명		주 관 기 관 (수요기업)	
수요과제명		분 야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협약기간
금액(천원)				. . . ~
비율 (%)				. . .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지원 분야별 사업목표를 정량적(%수치 등)으로 간략히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 감축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참고 2 증빙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 원본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제출
4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제출
5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사본 제출
6	고용 증빙 자료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7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8	가점 현황 증빙 자료	• 가점 해당 시 제출
9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 특허,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0	기존시설 주요구성 자료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11	설치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결선도 등	• 과제의 혁신기술(설비) 적용 내용 및 개선 계획 세부자료
12	설치설비의 사양 파악 자료	• 카다로그 등 규격 및 효율 파악 자료
13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및 증빙서류	• 기존 운영 현황 자료 및 설치계획에 따른 개선효과 산출자료
14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설비는 비교견적 포함 제출
15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16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17	자기진단서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참고 3 **관련서식**

**0000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 1. 과 제 명 :
- 2. 주관기관 :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부담금액 및 일자	금액(현금)(A=C+D)	선금(70%)(C)	잔금(30%)(D)
	부담일자		중간점검 이후 30일 이내
현물 부담 금액	금액(현물)(B) ※ 설비공급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주관 기관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3.3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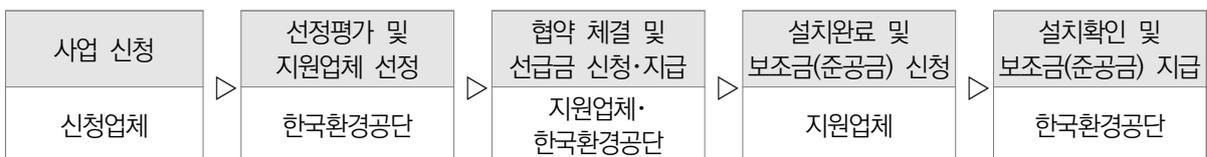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고, 유상할당 비중 상향(3→10%) 등으로 **할당대상업체 부담 심화**
- 2050 탄소중립 및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업체의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감축규제와 함께 재정지원 확대 필요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 포함)
- **(지원규모)** '22년 904억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00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감축설비 지원, 상생프로그램) : 704억원
- **(지원내용)** 할당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보조율: 중소 70%, 중견 50%)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보조율: 50%)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대기업포함)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보조율: 5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1월부터(예산 소진시까지 단계별 공모)('23년 미정)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 032-590-5616~5619, 5649, 5650)

참고사항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



참고 1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5.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6. 전처리장치	원료 등의 전처리로 후단 공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7.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전동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또는 인버터 제어형 전동기로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등
8. 고효율 기기	기존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고효율 버너 등
9. 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10. 공정개선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1~9번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 다른 감축설비와 병행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12. 기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사업장의 설비 단위 계획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업체명			사업장명			
설비 담당자명			연락처	☎		
부서명/직위			이메일			
설치지 주소						
메인설비명			설비용도			
계측설비명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적용 방법론			산정 활동자료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		
연간 감축량	tCO ₂ -eq/yr		투자회수기간	년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비투자비에 제외 금액(찰서 건물공비 토사구입비)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외 금액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금액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 ¹⁾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착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액 집행 가능	<input type="checkbox"/>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input type="checkbox"/> 중복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중복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 단, 공사계약 체결 중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 **설비 설치 계획**

사업개요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성과)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계약체결(조달청 이용)	20 . . ~ 20 . .	계약서 작성
기존설비 측정		전력량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장비입고, 설치공사
시운전·준공확인		시운전 15일, 보조금 신청

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설비의 주요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주설비 특징



㉔

사후관리 계획

□ 계측기기 일반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일	일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 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 계획	

□ 사후관리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 계획	
유지 보수 인력 운용 계획	
기 타	감축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㉔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					
합계					

※ 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및 투자회수기간 산정

감축 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4.1868[GJ/Gcal]÷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사업 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 ₂ eq/TJ]
투자회수 기간산정	

※ 투자회수기간 산정시 전력·에너지·연료의 단가는 설비도입 직전년도에 평균가를 적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가격을 적용(직전년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가 적용)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라 신청 설비 명세

□ 계약체결계획

설비명	계약 내용명	견적금액(VAT제외, 단위: 원)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물품 및 설치공사 계약			
	물품1 계약			
	물품2 계약			
	설치공사 계약			
	전기공사 계약			
	소방공사 계약			
	정보통신공사 계약			
	컨설팅 계약			
	합계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단위 : 원)

구 분	당해연도		익년도		익익년도 이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보조금						
2. 자기부담금		30%		40%		30%
합계						

□ 예산집행계획

(단위 : 원)

보조세목	합계	자원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총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합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시설비 (03)	설계비							
		공사비				(철거비등)			
		시운전비							
	건설탕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 지원 항목 :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건설탕비
-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 비목별 30%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함
-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㉞ 수행기관(사업신청 업체) 소개서

수행기관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혁	
인력현황	
최근2년간 활동실적	



②

첨부 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정보 관련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설비 관련 서류	10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11	신규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14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15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16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데이터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참고 3 지원 신청서(상생프로그램)

사업장 단위 총괄 신청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주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장명	업종				
	주소	(우)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부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할당대상업체 <input type="checkbox"/> 비할당대상업체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사업장명					
	설치장소	(우)				
	담당자				사무실	☎
이메일				휴대전화	☎	
신청정보	방법론구분	<input type="checkbox"/> 외부사업 <input type="checkbox"/> CDM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록고유번호	
	방법론명					
	설비개수				계약건수	
	설비명 (총 개)	① (개)	② (개)	③ (개)		
	설치종료일	<input type="checkbox"/> 2022년 <input type="checkbox"/> 2023년 <input type="checkbox"/> 2024년			연간 감축량 (tCO ₂ -eq/yr)	
	보조금 신청비율 (%)	1년차	2년차	3년차	설비투자비 (VAT 제외)	백만원
					당해연도 보조금	백만원
위와 같이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장의 방법론 단위 계획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신청설비	업체명 (주사업자)			업체명 (부사업자)			
	방법론						
	설비명						
	설비개수			설비용도			
감축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 ₂ -eq/yr		사업후 배출량	tCO ₂ -eq/yr		
	누출량	tCO ₂ -eq/yr		연간 감축량	tCO ₂ -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자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자침 참고)		개		
그 간 한국환경공단에서 감축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						년	
해당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						년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비투자비에 제외 금액(철거비, 건물공사비, 토지구입비)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외 금액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외 금액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 ²⁾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착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액 집행 가능		<input type="checkbox"/>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input type="checkbox"/> 중복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중복		

2)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 단, 공사계약 체결 중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사업명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
2) 사업목적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
3) 적용설비 및 기술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법적추가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의무를 초과하여 발생한 실적을 기술
2) 실질적 투자여부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 기술, 증빙자료 첨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 명칭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 기술
1-2) 적용조건 및 타당성	감축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의 경계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
2-2) 사업 시행이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3) (예상)사업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후 예상되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3-4) (예상)누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방법론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
3-5) (예상)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
4) 모니터링 방법론	
<p>〈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p>	

4 신청 설비 명세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계약체결(조달청 이용)	20 . . ~ 20 . .	계약서 작성
기존설비 측정		전력량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장비입고, 설치공사
시운전·준공확인		시운전 15일, 보조금 신청

□ 설비별 일반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 (단위)	용도
1	주설비					
	부대설비					
	부대설비					
2	주설비					
	부대설비					
	부대설비					

※ 주설비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

□ 계약체결계획

설비명	계약 내용명	전적금액(VAT제외, 단위: 원)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물품 및 설치공사 계약			
	물품1 계약			
	물품2 계약			
	설치공사 계약			
	전기공사 계약			
	소방공사 계약			
	정보통신공사 계약			
	컨설팅 계약			
합계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계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원)

구 분	당해연도	
	금액	비율
1. 보조금		100%
2. 자기부담금		
합계		

□ 예산집행계획

(단위 : 원)

보조세목	합계	재원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총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합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 지원 항목 :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 비목별 30%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함
-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5

수행기관(사업신청 업체) 소개서

□ 주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혁	
인력현황	
최근2년간 활동실적	

□ 부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연혁	
인력현황	
최근2년간 활동실적	



6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사업장 정보 관련 공통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위임장(필요 시)		
	8	기업 구분 확인서류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 설비 관련 서류	10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11	신규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2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3	기존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감축 량 관련 서류	14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15	<i>감축실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i>		
	16			
	17			
	18			
	19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대기업 확인서류 : 기업집단포털(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 [별지 제4호서식]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3.4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설비 지원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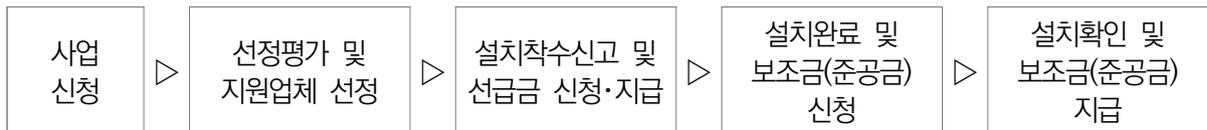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목표관리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규모) 1500백만원(30개소×100백만원×50%)
- (지원내용) 감축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2월('23년 미정)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032-590-5211, 5217)

■ 참고사항 :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참고 1 신청서류

		접수번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법인등록번호			
	기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업 종					
	사무소	주 소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 신청정보	설 비 명					
	계 약 방 법		<input type="checkbox"/> 자체계약		<input type="checkbox"/> 조달청	
	설비 투자비 (천원, VAT제외)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예상감축량 (tCO ₂ e/yr)			
	시공회사명	담당자	전화			
	예상 사업기간	. . . ~ . . .				
<p>위와 같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업체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㉔ 설비설치계획서

□ 설비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치목적	
설치사업추진내용	
추진성과(기대효과)	
자금조달계획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구분	설비명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내용연수	용도 및 기능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설비의 주요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계약체결(조달청 이용)	20 . . ~ 20 . .	계약서 작성
기존설비 측정		전력량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장비입고, 설치공사
시운전·준공확인		시운전 15일, 보조금 신청



라

절감효과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 ₂ e/yr)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yr)
1	CO ₂			CO ₂			
2	CH ₄			CH ₄			
3	N ₂ O			N ₂ O			
4							
합계							

※ 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감축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정	<p>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 [tCO₂eq/TJ]</p>
사업 후 배출량 산정	<p>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 [tCO₂eq/TJ]</p>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마 신청설비명세

□ 집계표

구분	설비명	계약내용명	견적금액 (VAT제외, 단위: 천원)	계약방법 (자체,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1		설비 제조		
2		시공		
3		컨설팅		
합 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설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설비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합계 =①+⑤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시설비 (03)	설계비 (02)	설계비						
		공사비			(철거비등)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



④

사후관리계획

□ 계측기기 일반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 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 계획	

□ 사후관리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 계획	
유지 보수 인력 운용 계획	
기 타	

④

첨부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공통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설비	8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9	신규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0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관련서류	11	기존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12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1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근거 데이터(excel 등)		

※ 기업구분 증빙서류 발급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산업통상자원부)

※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참고 2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5.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6. 전처리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 등의 전처리로 후단 공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7.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또는 인버터 제어형 전동기로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등
8. 고효율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고효율 버너 등
9. 불소가스 저감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10.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1~9번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11. 에너지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 다른 감축설비(제어시스템 포함)와 병행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1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함(감축실적 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3.5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지원사업

추진배경

- 탄소배출 수준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탄소 수출규제가 강화 추세**
 - (탄소국경세) 수입품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자국의 규제수준보다 미흡시 관세 부과
 -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글로벌 대기업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고 천명, 이에 따라 납품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수준에 따라 입찰조건이 변경
 - (탄소배출량 표시제) EU 등은 수입제품에 제품의 전과정(원료채취-이송-생산-사용-폐기/재활용)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기 요구, '24년 자동차배터리에 규제 적용, 이후 확대 예정
-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수출규제에 대해 신속 대응 필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반 중소·중견기업도 사전 준비 불가피
 - * 대기업이 해외 수출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납품업체에 탄소배출 감축 요구 가능
- 국내의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자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원 필요**
 - ※ 중소기업 중앙회, 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에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요구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적의 설비 및 부대장치 설치·개선
-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금리) 정책지원용자 금리(분기별 고시, 변동금리, '22년 4분기 3.73%)
- (지원금) 총 500억원(사업자별 최대 80억원, 최소 1천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에 **매월 공지**
-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 매뉴얼, 자동 계산기능(3월이후), 챗봇(카카오톡 Q&A 기능) 등 제공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32-540-2178, 2177)

참고사항 : 유튜브에서 “미래환경산업용자” 입력시 용자사업 소개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 안내



참고 1 지원 대상시설 예시

시설 구분	지 원 범 위
폐열회수 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차압터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예)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인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및 냉동기 포함)
고효율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 터보블로워 등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예)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가열로 및 열처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 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②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공정가스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식각·증착 공정의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최적운전제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예)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등으로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폐기물전처리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전처리(파쇄기, 선별기 등)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유체커플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온실가스 포집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예)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 저장 장치 포함
신·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신에너지)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부생가스 이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증기 재압축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정책사업 수행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은 설비 * 공공기관 감축설비 지원사업(환경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너지공단) 등

참고 2 용자 지원 신청서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중, 대기 *중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 내용	용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 0 0		전화 번호	직접 입력			
<p>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 년 00 월 00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 : _____ (날인·서명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p>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_____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용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용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폐열·폐기물·부생가스	폐열회수설비, 가열로·열처리로, 폐기물열분해시설, 폐기물전처리장치, 공정 부생가스이용장치
에너지·연료	에너지고효율장치, 차압터빈시스템, 감축효과 연료로 전환
고효율 동력	인버터, 유체커플링, 증기재압축장치
관리제어	공정개선, 최적운전자동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신에너지	수소보일러, 수소정제개질시설, 수소연료전지, 기타 신에너지 이용시설
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태양열시설, 풍력시설, 바이오에너지, 기타 재생에너지 이용시설
포집·처리	이산화탄소온실가스 포집장치, F가스공정가스 처리장치
기타감축설비	기타 감축효과 설비
측량측정	계측기, 계량기, 유량계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설계엔지니어링, 철거비용, 기타 비용

참고 3 증빙서류 종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서식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서식1〉 인쇄하여 선택한 은행(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스캔파일 등록
2	〈서식 2〉 서약서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용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4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 확인발급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mes.go.kr)에서 확인 신청, 발급
5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환경정책자금시스템 자료실에서 가이드 및 엑셀틀 참고 ※ 작성 엑셀 파일과 서식4 파일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사업 선정 확인 서류 - 온실가스감축설비보조사업 선정 통보 공문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위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기술원의 검토 절차 생략
6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입 필요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9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0	[별표 4]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각종 해당 서류	• 서류 종류는 [별표 4]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11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기성 제품 구매하여 자체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매처(판매처)의 사업자등록증
12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를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13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
14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15	고효율 장치 인증서	• 고효율장치 설치 용자신청 경우, 기자재 별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서 제출



참고 4 관련 서식

서식 1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 종류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영업점)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제 성명: 차장 000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용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용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 다. 용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 라. 용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 나. 용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 다. 용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용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용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용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 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 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기대효과(연간)	비고 (융자지원 받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 기재)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 (tCO ₂ -eq)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 (tCO ₂ -eq)	온실가스감축량 (tCO ₂ -eq)	
1								
2								
3								
4								
5								
합계								

□ 에너지 절감 계획 ※ 에너지·전력 절감을 통한 상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드시 기재

NO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연간)				개선후 에너지사용량(연간)				기대효과(연간)		비고 (융자지원된 에너지절감 설비 기재)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단위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toe)	절감액 (백만원)	
1											
2											
3											
4											
5											
합계											

□ 기타(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대효과 여부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 상기 감축량, 절감량 산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반드시 “구비서류” 항목에서 등록 제출

3.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추진배경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규모 확대
 - ▶ (탄소중립기본법) NDC 최소 기준(‘18년比 35%이상) 설정 이후 NDC 상향안 마련(‘21.10)
 - ▶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지원을 적극 노력
 - ▶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공정 전환과 철강, 석유 화학, 시멘트 등 산업 부문의 친환경 연료 전환, 고효율 기기 대체 등을 통한 감축 방안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 필요
 - * 기준연도(‘18년) 국내 총배출량 727.6백만톤CO₂eq 중 전환·산업 부문은 약 73% 차지
- 녹색금융 추진 계획(‘21.1)에 따라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지원 대상·규모

- (지원금) 총 3.5조원 규모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 (지원내용) 연료전환(예시: 유연탄 → LNG), 고효율기기 도입, 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
 - * 최대 3%(중소기업)까지 대출금리 할인, 환경부와 취급 금융기관이 50:50으로 우대금리 지원
- (지원방식) 시중 금융기관의 민간자금으로 기업에 저탄소 설비 대출 지원하고, 기업의 우대 또는 감면 금리 50%를 지원하는 방식
- (지원기간) 10년 이내(시설자금)
- (대출한도) 취급 금융기관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문의



■ 사업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32-540-2178, 2177)



3.7 미래환경육성용자(녹색전환만)

■ 추진배경

-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

■ 지원 대상·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일반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용자 지원
-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
- (지원금리) 정책지원용자 금리(분기별 고시, 변동금리, '22년 4분기 3.73%)
- (지원금) 총 1,000억원(사업자별 최대 80억원, 최소 1천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에 **매월 공지**
-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 매뉴얼, 자동 계산기능(3월이후), 챗봇(카카오톡 Q&A 기능) 등 제공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32-540-2178, 2177)

■ 참고사항 : 유튜브에서 “미래환경산업용자” 입력시 용자사업 소개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 안내



